

제3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 
제1차 운영위원회  
【2024. 5. 2.(목) 10:00】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

#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4년 5월 2일  
전문위원 정 하 근

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4 - 52
- 나. 발 의 자: 박학용 의원 외 4명
- 다. 발의일자: 2024년 4월 23일
- 라. 회부일자: 2024년 4월 24일

## 2. 제안이유

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(2023.08.16. 개정, 2024.2.17. 시행)이 의회 의장과 구청장에게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의무를 부여하고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·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정하도록 개정됨으로 인해 법 개정 사항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법 제3조제3항의 개정 사항인 의장과 구청장의 주민조례청구 활성화를 위한 홍보 의무를 규정함(안 제2조제3항)
- 나. 법 제12조의 개정 사항인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·각하여부 결정 기한을 규정함(안 제12조)

다. 조례 제10조 관련 [별지 제6호 서식] 이의신청서 신설(안 별지 제6호 서식)

라. 기타 조항의 성격에 맞는 조 제목 수정 및 조항 정리

#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12조

#### 5. 검토의견

##### 가. 개정취지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에 따른 의장과 구청장의 홍보 의무, 청구의 수리·각하 기간 규정 등 법률의 개정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, 종전 조례에서 누락되었던 [별지 제6호 서식] 이의신청서를 신설·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.

##### 나. 주요 개정내용

- 법 제3조제3항의 신설에 따라 의장과 구청장의 홍보 의무 규정 신설
- 법 제12조의 청구의 수리·각하 기간을 법에서 정한 3개월로 규정함
- [별지 제6호 서식] 이의신청서 신설

##### 다. 비용추계

- 예산 수반 사항 없음

- 추후 구체적인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계획 등이 수립된 이후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.

## 라.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3조와 제12조의 개정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형식적·논리적 오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3개월이라는 기간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한 기간으로서 우리 구 조례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
※ 기간에 대한 규정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됨.
- 아울러,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개정 현황은 개정 완료 4개구 완료, 21개구 미완료인 상태임.
  - 개정 완료된 4개 자치구 모두 각하·수리 기간은 법의 규정과 동일한 3개월로 하고 있음.

구 분	완 료(4개)	미 완 료(21개)
자치구명	강남구, 관악구, 동작구, 중구	강서구, 강동구, 강북구, 광진구, 구로구, 금천구, 노원구, 도봉구, 동대문구, 마포구, 서대문구, 서초구, 성동구, 성북구, 송파구, 양천구, 영등포구, 용산구, 은평구, 종로구, 중랑구

- 주민조례청구는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정 수 이상 주민이 연대 서명으로 주민이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로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음.
-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 주민조례청구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**□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**

제3조(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, 참여·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 8. 16.>

[제목개정 2023. 8. 16.]

제12조(청구의 수리 및 각하)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, 제5조 및 제10조제1항(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,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.

1. 제11조제2항(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, 이하 같다)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
2.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(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 8. 16.>

1.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(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

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)부터 3개월 이내

2.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·결정이 끝난 날(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·결정이 끝난 날)부터 3개월 이내

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<개정 2023. 8. 16.>

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「지방자치법」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8. 16.>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23. 8. 16.>